

변경 대비표

1. 대상 펀드 :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 대상 :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3. 변경 사유 :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집합투자규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일괄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허남권), 추가(김화진)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4. 효력 발생(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5. 세부 변경 사항 :

◆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전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u>대차대조표</u>	<u>재무상태표</u>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p>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p>	<p>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p>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u>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 1월 1일 이후).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좌동></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 1월 1일 이후).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신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 2. <좌동></p> <p>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3. ~ 5.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 <좌동></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3. ~ 5. <좌동></p>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전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p>대차대조표</p> <p>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p> <p>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p><생략></p> <p>[책임] 허남권,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p> <p>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허남권,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p> <p><생략></p> <p>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 내역</p>	<p>재무상태표</p> <p><삭제></p> <p>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p> <p>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p> <p>[책임] 김화진,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p> <p>가. 운용전문인력 [책임] 김화진, 심창훈 [부책임] 김원기</p> <p>운용역 관련 정보 업데이트</p> <p>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 내역</p>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 투자비용/투자실적추이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운용전문인력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운용역 변경 내역 업데이트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기재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증권대차 거래의 위험 기재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연환산 표준편차 : <u>8.07%</u>) <후략>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연환산 표준편차 : <u>5.91%</u>) <후략>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생략〉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3부 1. 재무정보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생략〉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3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요약재무정보 〈신설〉	가. 요약재무정보 -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생략〉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신설〉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현황 기재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생략〉 〈신설〉	〈좌동〉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 · 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 하는지 여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1. <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및 한국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1. <좌동></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 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 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제5부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p><지분증권거래></p> <p>2) 선정방법</p> <p>-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 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 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u>매 분기</u> 평가 가능한 < 후략></p>	<p><지분증권거래></p> <p>2) 선정방법</p> <p>-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 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 이 있는 각 구성원이 중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u>매월</u> 평가 가능한 <좌동 ></p>